

고구려 상장의례 시론

강진원*

목 차

I. 머리말
II. 상장의례 추이

III. 상장의례 공간과 운영
IV. 맺음말

국문 요약

고구려에서는 애초 100일상을 지냈다. 하지만 3세기 전반 이후 장기간의 빈을 수반한 3년상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빈이 길어진 이유는 왕실에서 고분을 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기 때문이다. 왕실의 빈소는 왕궁과 떨어진 곳에서 소재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빈이 끝난 뒤 시신을 실은 관이 무덤까지 이동하였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본디 후장이 이루어졌으며, 3세기 전반 이후 무덤 주변에 식수 행위도 나타났다. 그러나 4세기 후반~5세기에 걸쳐 박장 풍조가 강해진 결과, 매장 시 죽은 이의 물품을 타인에게 분배하는 습속이 대두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례 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망자를 보내던 전통은 유지되었다.

주제어 : 殯, 100일상, 3년상, 빈소, 물품 분배 행위, 식수

*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liechten@sookmyung.ac.kr

I. 머리말

사람이 죽은 뒤 이루어지는 상장의례는 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이는 한국 고대에도 다르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 견해를 보면, 매장 이전 시신을 안치해 두는 殯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이 밝혀진 이래,¹⁾ 그러한 방식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비롯되었다는 설²⁾이 제기되었고, 생사관과 상장의례를 연계하려는 이해도 있었다.³⁾ 또 매장 전후 일회성 제사가 치러진 곳을 추정하기도 하였으며,⁴⁾ 상장의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복원하려는 시도⁵⁾도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 고구려 상장의례에서는 재래적인 부분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측면이 공존한다.⁶⁾ 그런데 특정 양상이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쳤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그것이 실행되던 방식에 관한 접근도 면밀하게 행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고구려 상장의례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의 선후 관계를 검토한 뒤, 해당 시기에 그러한 면모가 나타난 원인과 아울러, 그 공간과 운영의 문제에도 다가가 전반적인 열개를 맞춰 보겠다. 현재 상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의례의 흔적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장의례를 정밀하게 복원하는 것은 지나친 추론의 영역이라 체체 둔다. 전거 문헌에서 언급된 바를 염두에 두며, 그와 연관될 수 있는 고고학적 성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
- 1)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 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8, 188쪽; 權五榮,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11쪽.
 - 2) 김시덕, 2004, 「고구려 상례문화의 정체성」 『역사민속학』 18.
 - 3) 나희라, 2005, 「무덤과 무덤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인의 생사관」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문화』, 고구려연구재단;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131~147쪽.
 - 4) 강현숙, 2018, 「고구려 무덤제사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01, 70~74쪽, 80~82쪽.
 - 5) 崔泰淨, 2014, 「考古資料를 통해 본 高句麗 喪葬禮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25쪽; 나희라, 2008, 앞의 책, 126~127쪽; 崔泰淨, 2014, 위의 논문, 17쪽, 145~149쪽.

II. 상장의례 추이

1. 상장 기간과 빈

고구려 상장의례를 다룬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①『魏略』에 이른다. “(중략) 죽어서 장사함에 덧널(槨)은 있으나 널(棺)이 없다. ②100일간 상을 치르는데 후하게 장사하기를 좋아한다. ③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벌려 심는다.”⁷⁾

A-2. ①남녀가 이미 혼인하면 곧 장례에 쓸 옷을 조금씩 만든다. ②후하게 장사하니 금과 은 및 재물을 죽은 이를 보낼 때 모두 쓴다. ③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벌려 심는다.⁸⁾

A-3. ①(결혼 후) 곧 장례에 쓸 물품을 조금씩 만든다. ②(장례를 치름에) 금과 은 및 재물을 모두 써 후히 장사한다. ③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⁹⁾

A-4. ①죽으면 건물 안에서 殯하고, 3년이 지난 뒤吉日을 가려 장사한다. ②부모와 남편의 喪에는 모두 3년간 服喪하고, 형제는 3개월이다. ③初終에는 소리 내어 슬피 울지만, 장사할 때는 북을 쳐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보낸다. ④매장이 끝나면 죽은 이가 생시에 썼던 의복·노리개·수레·말을 모두 거두어 무덤 옆에 두는데, 장례에 모인 이들이 다투어 가지고 간다.¹⁰⁾

A-5. ①죽으면 건물 안에서 殯하고, 3년이 지난 뒤吉日을 가려 장사한다. ②부모와 남편의 喪에는 모두 3년간 服喪하고, 형제는 3개월이다. ③初終에는 소리 내어 슬피 울지만, 장사할 때는 북을 쳐 춤추고

7) 『태평어람』 권783, 사이부4, 동이4, 고구려, “魏略曰 …… 其死葬 有槨無棺 停喪百日 好厚葬 積石爲封 列種松柏”

『위략』의 고구려 상장의례 관련 기술은 『태평어람』의 다른 부분(권552, 예의부31, 槨, “魚豢魏略曰 高麗 其死葬 有槨無棺 停喪百日也”)이나 『한원』 변이부(“魏略曰 …… 其死葬 有槨無棺之”)에도 나오지만, A-1-①·②와 같은 내용이다.

8)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고구려,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9) 『후한서』 권85, 열전75, 동이, 고구려, “便稍營送終之具 金銀財幣 盡於厚葬 積石爲封 亦種松柏”

10)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고려, “死者 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 哭泣 葬則 鼓舞作樂以送之 埋訖 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置於墓側 會葬者 爭取而去”

‘初終’은 죽음을 의미한다고도 하고(權五榮, 2000, 앞의 논문, 7쪽 주6), 초상 이후卒哭까지의 장례 절차를 말한다고 보기도 한다(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韓國古代史研究』 65, 56쪽).

악기를 연주하며 보낸다. ④매장이 끝나면 죽은 이가 생시에 썼던 의복·노리개·수레·말을 거두어 무덤 옆에 두는데, 장례에 모인 이들이 다투어 가지고 간다.¹¹⁾

A-3의 전거 문헌(『後漢書』)은 A-2의 그것(『三國志』)과 같은 내용이고, A-5의 전거 문헌(『隋書』)과 A-4의 그것(『北史』) 사이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편찬 시기를 고려하면 A-3과 A-5는 각기 A-2와 A-4를 옮겨 적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후자에 주목해야 한다. A-2는 서진 무제 太康 연간(280~289),¹²⁾ A-4는 당 貞觀 10년(636) 즈음의 산물이다. A-1이 본래 실렸던 『魏略』은 위진교체기인 250~260년대에 편찬되었다.¹³⁾ 따라서 A-1·2는 대략 3세기, A-4는 후기의 상황을 전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실제 양자 사이에는 동일 사안을 달리 기록한 사례가 있다. 상장 기간의 경우 100일간 치른다고도 하나(A-1-②), 3년상을 행하였다고도 한다(A-4-①·②). 다만 모든 사안을 그렇게 바라보기는 곤란하다. 애초 존재하였던 습속이 후대에 채록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양상이 곧바로 해당 시기의 문헌에 실렸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에 관한 기술이 다르다면 어느 시기에 변모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쪽에만 전하는 기술이라면 검토의 폭을 열어 놓고 접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

그 면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빈을 포함한 상장 기간이다. 동일 사안에 관한 기술이 시기 별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애초 고구려에서는 상을 100일간 지냈다(A-1-②). 차대왕 20년(165) 10월, 왕이 죽임당한 뒤 즉위한 신대왕이 이듬해(166) 정월 사면령을 내린 일¹⁴⁾ 역시 그와 연계된 조치로 이해된다. 선왕을 제거하고 집권한 세력이 이렇게 시간을 끈 뒤 시체를 베풀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3개월은 100일과 다르지 않은 기간이므로, 신대왕 측은 차대왕의 장례를 마친 뒤 사면 조치를 통하여 정국을 새로이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후대에 이르면 기본적으로 3년간 상을 치르게 된다(A-4-②). 이는 중국 상장 제도의 영향으로 여겨진다.¹⁵⁾ 다만 그 양상은 일반적인 3년상과 달랐다. 중국의 3년상은 服喪이 3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빈 기간은 짧았다. 『禮記』에 따르면 천자와 제후의 빈 기간은 각기 7개월, 5개월

11) 『북사』 권94, 열전82, 사이 상, 고구려, “死者 殯在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埋訖 取死者生時服玩車馬置墓側 會葬者爭取而去”

12) 世界書局編輯部, 1984, 『二十五史述要』, 世界書局, 70쪽.

13) 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137쪽 주81).

14)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차대왕 20년, “冬十月 椽那自衣明臨荅夫 因民不忍 弑王 號爲次大王”; 같은 책, 권16, 고구려본기4, 신대왕 2년, “春正月 下令曰 …… 國人旣聞赦令 無不歡呼”

15) 金哲堧, 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266쪽.

이었는데,¹⁶⁾ 한대의 황제는 그보다 훨씬 짧게 빈을 치렀으며,¹⁷⁾ 남조에서도 대개 1년 미만이었다.¹⁸⁾ 반면 고구려에서는 시신을 3년간 殯所에 안치하였으므로(A-4-①), 그동안 시신을 묻거나 처리하지 않고 두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동천왕 22년(248) 왕이 죽자 그를 따라 자결한 이들을 썩(柴)으로 덮어 두었다는 전승¹⁹⁾은 그러한 풍습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무령왕 부부의 묘지를 볼 때 백제 또한 3년간 빈이 행해졌다고 이해되는 점,²⁰⁾ 고대 일본에서도 지배층(貴人)은 3년간 빈을 실시하였음²¹⁾과 아울러 군주를 대상으로 한 빈은 대개 1년이 훌쩍 넘게 치러진 점²²⁾을 고려하면, 이를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²³⁾ 거란(요)도 사망 이후 본 매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²⁴⁾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관건은 애초에도 그러하였는지다. 관련 기록에서는 그저 100일간 상을 지냈다고 하였을 뿐, 빈의 기간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상을 치렀다는 ‘停喪’(A-1-②)이란 표현이 왜의 사례를 설명할 때는 장례를 마치기까지의 기간으로 나오므로,²⁵⁾ 고구려도 그렇게 볼 수 있다.²⁶⁾ 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3년상이 정착하며 빈이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다만 가능성에서 보자면 전자가 자연스럽다. 상중의 시간 대부분을 빈이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모습이며 중국의 상장제와도 구별되기에, 그것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여기기 쉽지 않은 탓이다. 이는 실제

- 16) 『예기』 왕제, “天子七日而殯 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大夫士庶人 三日而殯 三月而葬”
 17) 孔錫龜, 2008, 「集安地域 高句麗王陵의 造營」 『高句麗渤海研究』 31, 132쪽 주29) <표3> 참조.
 18) 권오영, 2002, 「喪葬制를 中心으로 한 武寧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百濟文化』 31, 58~59쪽.
 19)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2년 9월, “王薨 葬於柴原 國人懷其恩德 莫不哀傷 近臣欲自殺 以殉者衆 嗣王以爲非禮 禁之 至葬日 至墓自死者甚多 國人伐柴 以覆其屍 遂名其地曰柴原”
 20)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4~15쪽; 조경철, 2009, 「백제 왕실의 3년상-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5, 113~114쪽; 이한상, 2014, 「백제의 상장의례와 고대 동아시아」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85~86쪽; 박서영, 2016, 「백제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용도와 성격」 『美術史學研究』 289, 7~9쪽; 이장웅, 2019, 「백제 武寧王과 王妃의 喪葬禮-殯과 假埋葬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33, 227쪽.
 그와 달리 중국과 같은 복상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병호, 2018, 「웅진·사비기 백제 왕실의 조상 제사 변천」 『先史와 古代』 55, 16~22쪽)도 제기되었다.
 21)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왜국, “死者斂以棺槨 親賓就屍歌舞 妻子兄弟以白布製服 貴人三年殯於外 庶人卜日而瘞 及葬 置屍船上 陸地牽之 或以小輿”
 22) 和田萃, 1995, 『日本古代の儀禮と祭祀・信仰(上)』, 塙書房, 18쪽.
 23) 6세기 전반 백제계 도래인에 의해 고대 일본의 빈 의례가 정비되었다고 여기기도 하고(和田萃, 1995, 위의 책, 34쪽). 일본에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빈은 백제 상장 풍속의 영향이며, 欽明 13년(641)에 궁 북쪽에서 이루어진 ‘百濟大殯’을 그 사례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장웅, 2019, 앞의 논문, 257~258쪽).
 24) 권오영, 2022, 「유라시아 동부 여러 정치체의 상장의례」 『2022년 국립공주박물관 국제학술대회: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 18쪽.
 25)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왜, “其死有棺無槨 封土作冢 始死停喪十餘日 當時不食肉 喪主哭泣 他人就歌舞飲酒”
 26)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74~75쪽.

사례로도 뒷받침된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①그 죽음에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쓰며,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은 경우 백 명을 씬한다. 후히 장사하니, 덧널은 있으나 널이 없다[②『魏略』에서 말한다. “그 풍속에서는 5개월간 상을 치르는데, 오래 들수록 영예롭게 여긴다. 죽은 이를 제사함에 날 것도 있고 익은 것도 있다. 상주는 빨리하고 싶지 않으나 다른 이들이 강권하여 항상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를 예절로 삼는다. 그 상중의 옷은 남녀 모두 순백이고, 부인은 베로 만든 面衣를 착용하며, 반지나 노리개를 몸에서 제거하니, (그 방식이) 대체로 중국과 거의 비슷하다.”].²⁷⁾

B-2. ①(고국천왕 19년) 여름 5월, 왕이 돌아가셨다. 故國川原에 장사하고, 이름을 ‘고국천왕’이라 하였다. ②산상왕은 이름이 延優[다른 이름은 位宮이다]로 고국천왕의 동생이다. (중략) 發岐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 裴川에 이르러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屬須가 소리 내어 슬피 울고, 그 시신을 거두어 임시로 묻고(草葬) 돌아왔다. (중략) ③ 가을 9월, 담당관에게 명하여 발기의 喪을 받들어 맞이케 하여, 왕의 禮로 裴嶺에 장사하였다.²⁸⁾

B-1은 부여의 상장 풍속에 관한 것인데, 전거 문헌(『위략』·『삼국지』)을 볼 때 A-1·2와 시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상장 시 얼음을 썼고(B-1-①), 매장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B-1-②). 고구려에서 100일, 즉 3~4개월간 상을 치렀던 것과 기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주목되지만, 더욱 눈여겨볼 점은 얼음의 사용이다. 중국에서는 얼음을 담은 盤을 시신 아래에 두어 부패를 방지하였고,²⁹⁾ 조선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 부여의 경우 5개월에 걸쳐 상이 치러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빈이 길어 시신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얼음이 광범위하게 쓰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얼음은 장기간에 걸친 빈의 존재를 드러낸다. 고구려의 경우 부여의 풍속과 같은 점이 많았으므로,³⁰⁾ 빈 또한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

27)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부여, “其死夏月皆用冰 殺人徇葬 多者百數 厚葬 有槨無棺 [魏略曰 其俗停喪五月 以久爲榮 其祭亡者 有生有熟 喪主不欲速 而他人彊之 常諍引以此爲節 其居喪 男女皆純白 婦人着布面衣 去環珮 大體與中國相彷彿也]”

28)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고국천왕 19년, “夏五月 王薨 葬于故國川原 號爲故國川王”; 같은 책, 같은 권, 산상왕, “山上王 諱延優[一名位宮] 故國川王之弟也 …… 發岐聞之 不勝慙悔 奔至裴川 自刎死 屬須哀哭 收其屍 草葬訖而還 …… 秋九月 命有司 奉迎發岐之喪 以王禮葬於裴嶺”
이때의 ‘草葬’은 시신을 짚으로 싸 가매장한 행위이다(이한상, 2014, 앞의 논문, 81쪽).

29) 『의례』 사상례12, “土有冰 用夷槃 可也 [謂夏月而君加賜冰也 夷槃承尸之槃 喪大記曰 君設大槃 造冰焉 大夫設夷槃 造冰焉]; 『후한서』 지6, 의례 하, 大喪, “槃冰如禮 [周禮 凌人 天子喪 供夷槃冰 鄭玄曰 夷之言尸也 實冰於槃中 置之尸牀之下 所以寒尸也 漢禮器制度 大槃廣八尺 長一丈二尺 深三尺 漆赤中]”

30)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고구려,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그러한 측면을 더욱 잘 보여 주는 것이 B-2다. 해당 기록은 고국천왕 19년(197) 5월 왕이 사망한 뒤 아우인 연우가 왕위에 오른 데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발기의 자결과 사후 처리를 전한다. 그런데 발기가 연우, 즉 산상왕이 즉위한 5월 무렵 죽었음(B-2-②)에 비하여 정식으로 장례가 치러진 것은 9월이다(B-2-③). 매장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00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산상왕 측이 발기의 시신을 그토록 오래 둘 필요는 없다. 징벌적 의미에서 그리했다 여길 수도 있겠으나, 발기의 아들이 여전히 상당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고,³¹⁾ 왕에 상당하는 격식(王禮)으로 묻은 것(B-2-③)을 보면 달리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B-2는 사후 100일가량의 빈을 지낸 뒤 매장하는 풍습이 실재하였음을 전하는 전승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³²⁾

요컨대 애초 고구려에서는 장기간의 빈을 동반한 100일상이 행해졌다. B-2를 보건대, 이 풍습은 2세기 말까지는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100일상과 선후 관계를 이루는 3년상은 언제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을까. A-1의 시기적 하한이 3세기 중엽임을 고려하여 그 이후라 여길 수도 있으나, 편년체 기사가 아니므로 확신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태학 설립(372)이나 울령 반포(373)가 이루어진 소수림왕 시기를 주목하기도 하지만,³³⁾ 중국 문물은 이전에도 수용되고 있었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성립 시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C-1. 17세손에 이르러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께서 18세에 왕위에 올라 이름을 ‘永樂大王’이라 하셨다. (중략) 昊天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39세에 돌아가시어 세상을 버리시니, 甲寅年(414) 9월 29일 乙酉에 山陵으로 옮겼다.³⁴⁾

C-2. ①乙卯年(355)에 … ②큰 해인 丁巳(357) 5월 20일에 … 中郎夫人 … 무덤을 덮는 기와를 만들었다. 또 백성 4천으로 … 만들어 … 때마다 흥하게 되니 … 萬世에 … 35)

C-3. 태후 于氏가 죽었다. 태후가 임종하며 유언하였다. “내가 도의에 어그러지게 행동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國壤(고국천왕)을 뵈겠는가. 만일 신하들이 차마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못하겠

31)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고구려,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難加駁 位居是也”

32) 이를 3개월간 이루어진 형제상(A-4-②)의 반영으로 여기기도 한다(孔錫龜, 2008, 앞의 논문, 131쪽). 그러나 당시 그 정도로 상례가 정비되었을 것 같지는 않기에, 100일상을 보여 주는 흔적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한다. 발기를 왕의 장례로 치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3) 趙法鍾, 1995, 앞의 논문, 189쪽.

34) 『광개토왕비문』, “遷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 昊天不弔 卅有九 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 遷就山陵”

35) 『우산하 3319호분 출토 와당 명문』, “乙卯年 …… 中郎夫人 / 太[歲]在丁巳五月廿日 中郎夫人 造蓋墓瓦 又作民四[千] …… [四]時興詣 …… 萬世”(판독문은 기경량, 2016,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권운문 와당 명문의 판독과 유형』 『高句麗渤海研究』 56, 62~63쪽, 65쪽 참조)

다면, 산상왕릉 곁에 나를 묻어주기를 바라오.” 마침내 그 말과 같이 장사하였다. 무당(巫者)이 말하였다. “국양(왕)이 저에게 내려와 말씀하시길,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그와 싸웠는데, 물러와 생각하니 낮이 두꺼워도 차마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없다. 네가 조정에 알려 물건으로 나를 가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국천왕)릉 앞에 소나무를 일곱 겹으로 심었다.³⁶⁾

C-1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재위 22년째 되던 해(412)에 39세로 죽은 뒤, 2년이 지난 신유년, 즉 장수왕 2년(414) 9월 29일에 매장되었다. 그는 10월에 세상을 떠으므로,³⁷⁾ 사후 24개월째 되던 때 묻힌 셈이다.³⁸⁾ 그런데 널리 알려졌듯이 당시 중국의 3년상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25개월째, 혹은 27개월째 달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광개토왕의 사례는 전자와 가깝다. 따라서 늦어도 5세기 전후 고구려에서 3년상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⁹⁾ 물론 만 24개월에서 조금 모자란 기간이란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⁴⁰⁾ 오차가 크지 않기에 3년상으로 보아도 좋다. 고구려에서 3년상 때 길일을 택하여 장사하였던 사실(A-4-①), 아울러 비슷한 시기(408)에 조성된 덕흥리고분 또한 공자나 서주 무왕의 권위에 기대어 택일을 정당화하였던 점⁴¹⁾을 보면, 광개토왕을 매장해야 할 무렵 그를 떠나보내기 좋다고 여겨진 때가 9월 29일이었기에 기일을 조금 당겨 매장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어찌 되었든 광개토왕·장수왕 시기 3년상이 시행된 사실은 확인된다.

C-2는 그보다 앞서 3년상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같은 고분에서 나온 와당 명문에 을묘년(355)과 정사년(357)이란 기년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만 2년, 햇수로 3년이란 간격이 나타

36)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8년 9월, “太后于氏薨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 將何面目見國壤於地下 若臣不忍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 遂葬之如其言 巫者曰 國壤降於予曰 昨見于氏歸于山上 不勝憤 遂與之戰 退而思之 顏厚不忍見國人 爾告於朝 遮我以物 是用植松七重於陵前”

37)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5, 광개토왕 22년 10월, “王薨 號爲廣開土王”

38) 사망 시기를 1년 앞당겨 36개월째 되던 달에 묻혔다고 보기도 하나(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敎」 『東北亞歷史論叢』 20, 231~232쪽),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비문」에 나온 왕의 재위 연차가 같으므로 따르기 어렵다.

39)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1쪽; 김시덕, 2004, 앞의 논문, 397쪽; 孔錫龜, 2008, 앞의 논문, 132~133쪽;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1쪽; 이장웅, 2019, 앞의 논문, 248쪽.

한대까지는 25개월간 상을 치르다 후한 말 鄭玄이 27개월을 지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조위의 王肅은 예전 방식이 이치에 부합된다고 한 뒤 晉代에는 25개월상이 통용되었다(권오영, 2002, 앞의 논문, 58쪽; 조경철, 2009, 앞의 논문 110~111쪽). 뒤에서 거론하듯 고구려에서 3년상이 수용된 것은 3세기 이후이므로, 당시 중국(조위)에서 세를 접한 왕숙의 설을 존중한 것이 아닐까 한다.

40)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31쪽.

41) 「덕흥리고분 목서명」, “年七十七薨焉 永樂十八年 太歲在戊申 十二月辛酉朔 廿五日乙酉 成遷移玉柩 周公相地 孔子擇日 武王選時”

나기에 이를 3년상의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⁴²⁾ 을묘년 와당은 묘주가 죽어 무덤을 축조할 때, 정사년 와당은 무덤이 완성되어 시신을 매장할 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년상의 시기적 상한은 4세기 중엽으로 올려볼 수 있다. 다만 명문의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 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C-3이다. 이는 동천왕이 고국천왕릉 주변에 소나무를 둔 경위를 말한다. 고구려에서 묘역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 사실(A-1-③ 및 A-2-③)을 고려하면, 해당 전승은 그러한 풍속의 유래를 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여겨진다.⁴³⁾ 일종의 기원설화로 이해되는데, 동천왕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유는 그즈음, 즉 3세기 무렵 왕릉 주변에 나무를 두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무덤 인근에 나무를 심는 것은 중국 한대에 후장의 지표 중 하나로 성행하였다.⁴⁴⁾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상장 관련 풍속이라 하겠는데,⁴⁵⁾ 3년상도 마찬가지로 그 또한 植樹 행위가 전해진 때로부터 오래지 않은 시기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은 鎔石, 즉 열이 가해져 녹은 돌의 존재를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국내도읍기 고분 중에는 용석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를 화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⁴⁶⁾ 시신을 직접 태웠다고 확신하기 어렵기에 달리 파악해야 한다.⁴⁷⁾ 죽은 이의 혼령을 하늘로 올리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이 선택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⁴⁸⁾ 하지만 시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장부 외곽에 불을 지른 것이기에 따르기 힘들다. 당시는 영혼이 무덤에서 물질적인 생활을 한다고 여기며 시신의 보존을 중시한 육체혼 관념이 강고하였다는 점⁴⁹⁾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산자와의 단절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는 편⁵⁰⁾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유를 어떻게 보든 이러한 모습은 당시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장례 의식과 구별된다.

그런데 고분에 불을 지른 사례는 초기 적석총에서 자주 발견된다. 왕릉급 고분에 한정하면 국내도읍기 초기에 만들어진 마선구 626·2378호분 및 산성하 전창 36호분 등에서 확인될 뿐, 임강

42) 孔錫龜, 2008, 앞의 논문, 133쪽.

43) 나희라, 2008, 앞의 책, 145쪽.

44) 楊樹達, 2000, 『漢代婚喪禮俗考』, 上海古籍出版社, 102쪽; 洪廷珂, 2003, 「위진남북조시대 ‘흉문백력’에 대하여」 『魏晉隋唐史研究』 10, 110쪽.

45) 정재윤·박초롱, 2020, 「문헌 및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백제를 중심으로-」 『百濟學報』 31, 40쪽.

46) 강현숙, 2006, 「중국 길림성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의 구조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1, 32쪽; 나희라, 2008, 앞의 책, 135~136쪽.

47)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81~182쪽.

48) 方起東, 1993, 「高句麗的墓制和葬俗」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993-1·2; 1997,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10, 北京出版社, 155쪽(나희라, 2008, 앞의 책, 135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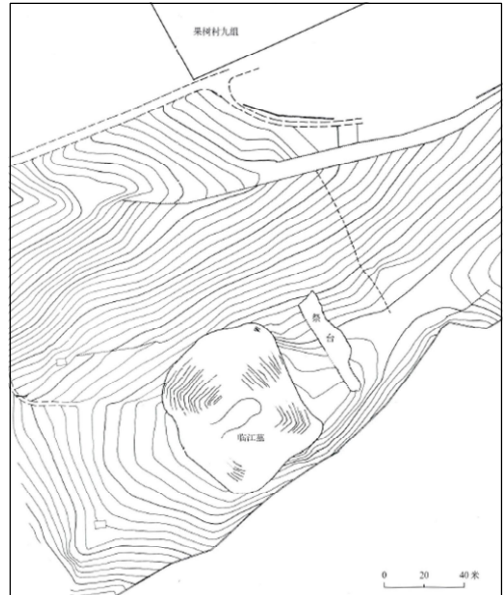
49) 강진원, 2021,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224~229쪽.

50) 해당 관념에 대해서는 나희라, 2008, 앞의 책, 49~50쪽 참조.

총(그림 1) 참조) 이후로는 그렇지 못하다.⁵¹⁾ 임강총은 동천왕릉으로 여겨지므로,⁵²⁾ 해당 고분이 조성될 무렵 왕실에서 매장부에 불을 지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⁵³⁾ 고분에서의 焚燒 행위가 그다지 중국적이라거나 유교적이지 않은 점, 무덤에 식수가 행해진 것 또한 이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방식의 소멸은 중국의 상장 문화가 보급된 결과로 생각된다.

요컨대 고국천왕릉의 식수 전승과 왕릉에서의 분소 행위가 소멸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동천왕 시기(227~248) 이후, 대략 3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중국의 상장 문화가 점차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나갔다. 그렇다면 같은 범주에 속하는 3년상 또한 그 무렵 상당한 세를 확보해 나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시는 중원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규모의 중국인이 고구려에 다다르기 시작하였다. 고국천왕 19년(197) 漢人의 대거 이주⁵⁴⁾ 및 산상왕 21년(217) 平州 사람들의 책성 안치⁵⁵⁾가 그 예이다. 이들은 한대의 상장 문화를 숙지하였기에, 그들과의 접촉은 새로운 조류가 퍼지는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풍조가 급속히 뿌리내리지는 못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상장의례는 보수적인 성격도 상당히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100일상도 병존하는 과도기적 양상이 일정 기간 이어졌을 터인데, 3세기 중엽을 시기적 하한으로 하는 『위략』에 100일상이 기재된 것(A-1-②)은 그 흔적으로 여겨진다. 즉 100일상의 경우 애초부터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까지도 사회 일각에서 치러진 결과, 기록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3년상이 우위를 점하였으



〈그림 1〉 임강총(임강묘) 평면도
(출처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52쪽)

51) 강현숙, 2006, 앞의 논문, 32~33쪽.

52) 강진원, 2013a, 「고구려 陵園制의 정비와 그 배경」 『東北亞歷史論叢』 39, 15쪽.

53) 이러한 행위와 순장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84쪽), 왕실이 순장에서 파생된 순사 행위를 非禮로 인식한 일 또한 동천왕 사후에 벌어졌다는 점(주19))은 시사되는 바가 적지 않다.

54)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고국천왕 19년, “中國大亂 漢人避亂來投者甚多 是漢獻帝建安二年也”

55)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산상왕 21년 8월, “漢平州人夏瑤 以百姓一千餘家來投 王納之 安置柵城”

며, 4세기 이후 새로운 흐름이 굳건히 자리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⁵⁶⁾

고구려의 3년상은 장기간의 빈을 수반하였다. 따라서 3년상을 자체적으로 변용하였다고 이를 만하다.⁵⁷⁾ 그 원인은 무엇일까. 기존의 100일상에서도 빈이 오래 치러졌기에, 그러한 전통을 이어 갔다고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3년이나 두는 것을 그렇게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이에 죽은 이의 소생이나 단절, 혹은 살을 썩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⁵⁸⁾ 다만 3년은 소생을 기다리기에는 차고 넘치고, 시신이 썩기까지는 짧은 시간이며, 단절이 주된 목적이라면 매장을 조속히 종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해된다.

하나는 무덤 조성에 걸리는 시간이다. 민중왕은 자신이 죽은 뒤 능묘를 만들지 말고 석굴에 장사하라고 하였는데,⁵⁹⁾ 이는 무덤이 사후에 조영된다는 사고에 토대한 전승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사람이 죽은 뒤 3년이 지나 장사한 것(A-4-①)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왕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壽陵이 제도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여기기 어렵다.⁶⁰⁾ 즉 왕릉은 왕의 죽음 이후 조성되었던 셈이다. 그런데 임강총, 즉 동천왕릉부터 왕릉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여 분구 한 번의 길이가 60~70m를 넘기도 하였다.⁶¹⁾ 따라서 조영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국내도읍기에 시일이 흐를수록 능원을 정비하여 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왕의 사후 거대한 왕릉과 부대시설을 마련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결과, 3년상 또한 시신을 장기간 빈 상태로 두는 방식으로 정착하지 않았을까 한다. 규모 면에서 이전보다 현격히 커진 임강총의 조성 시점과 3년상의 시행 시기가 맞물리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⁶²⁾

다른 하나는 순조로운 왕위 계승 도모이다. 이 무렵 모반의 대상자는 모두 왕의 근친이었다. 산상왕 즉위 시(197) 王兄 발기의 반발(B-2-②)과 중천왕 원년(248) 王弟 預物·奢句의 모반⁶³⁾

56) 4~5세기 이후 고분에서 용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孫仁杰, 2001, 「高句麗 石室墓의 起源」 『高句麗研究』 12, 948쪽, 951쪽)은 그 결과로 여겨진다.

57)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25쪽; 김시덕, 2004, 앞의 논문, 394쪽;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1쪽.

58) 權五榮, 2000, 위의 논문, 23~24쪽 참조.

59)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민중왕 4년 7월, “又田 見石窟 顧謂左右曰 吾死 必葬於此 不須更作陵墓”

60) 강진원, 2021, 앞의 책, 116쪽.

61) 국내도읍기 왕릉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강진원, 2013a, 앞의 논문, 26~27쪽 참조.

62) 빈 기간이 길었던 결과 그동안 무덤을 축조하였다는 견해(孔錫龜, 2008, 앞의 논문, 134쪽)도 제기되었다. 다만 빈이 3년간 행해지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에, 그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거대 고분 조영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

한편 고대 일본 군주의 빈이 길었던 원인을 무덤 축조 기간에서 찾기도 한다(姜琬錫, 2005, 「일본 고대의 殯(모가리)에 대하여」 『고문화』 65, 20쪽).

63)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중천왕 원년 11월, “王弟預物奢句等謀叛 伏誅”

및 서천왕 17년(286) 왕제 逸友·素勃의 역모⁶⁴) 등이 그것이다. 또 봉상왕은 즉위한 해(292) 숙부 달가(達賈)를, 이듬해(293) 왕제 돌고(咄固)를 모반의 혐의가 있다고 죽였다.⁶⁵ 집권력이 제약된 당시 왕에게는 근친이 위협 세력으로 여겨졌으며, 갓 즉위한 계승자의 위상이 견고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였는데, 해당 시기의 시조묘 親祀도 그 한 예이다. 새로운 왕이 시조로부터 이어지는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여 국내 통치를 원활히 하고자 한 것이다.⁶⁶ 장기간의 빈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시는 육체혼 관념이 성행하여 시신의 보존이 지니는 의미가 컸다. 그러하였기에 선왕의 혼령이 갓 즉위한 군주에게 힘을 심는 모양새를 드러내기에는 매장보다 빈이 유효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선왕의 혼령이 온전히 있음을 드러내기에는 무덤에 묻는 것보다 빈소에 두는 편이 나을 뿐 아니라, 혼령의 공존을 체감하기에도 접근성 면에서 무덤보다 빈소가 유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에서 선왕이 빈궁에 안치된 동안 혼은 이승에 있다고 믿어진 것⁶⁷)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왕으로서는 선왕의 시신을 되도록 오래 보존하고 이를 보여주고자 빈을 장기간 실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해 나갔으리라 생각된다.⁶⁸

이상은 왕실에 국한된 경우이다. 그러나 왕실이 장기간의 빈을 행함에 따라 점차 사회 저변으로까지 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3년상 풍속은 이후 큰 변함없이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물론 5세기 이후 왕릉의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능원도 쇠퇴하였으며⁶⁹) 왕권도 제고되었기에, 빈의 기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였을 터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졌기에 또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⁷⁰ 고대 일본의 경우 大化 2년(646) 박장령을 공포하

64)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서천왕 17년 2월, “王弟逸友素勃等二人謀叛 詐稱病往温湯 與黨類戲樂無節 出言悖逆 王召之僞許拜相 及其至 令力士執而誅之”

65)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원년 3월, “殺安國君達賈 王以賈在諸父之行 有大功業 爲百姓所瞻望 故疑之謀殺”; 같은 책, 같은 권, 같은 왕 2년 9월, “王謂其弟咄固有異心 賜死 國人以咄固無罪 哀慟之 咄固子乙弗 出遯於野”

66) 강진원, 2021, 앞의 책, 141~145쪽.

67) 谷川健一, 1983, 「王權の發生と構造」 『稻と鐵: さまざまな王權の基盤』, 小學館, 413쪽.

68) 이와 유사한 입장이 이미 제기되었으나(權五榮, 2000, 앞의 논문, 24~25쪽; 김시덕, 2004, 앞의 논문, 400~401쪽), 관련 사안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69) 강진원, 2013b, 「고구려 陵園制의 쇠퇴와 그 배경」 『한국문화』 63, 197~199쪽.

70) 그 일례로 「고을덕 묘지명」에 고을덕이 당에서 죽은 지 2년 7개월이 넘는 시기에 매장되었다고 한 점을 들기도 한다(이장웅, 2019, 앞의 논문, 234~235쪽). 하지만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을 보면, 사후 장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다. 사후 1년이 되지 않아 매장한 것은 중국 풍속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3년 이상이 걸린 사례가 다수라 정국 상황으로 인한 지연이나 歸葬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에서 관인으로 활동한 고구려·백제 유민에게 적용된 상장의례가 당시의 일반적인 사례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정호섭, 2021, 「唐의 喪葬을 통해 본 고구려·

여 왕 이하 서민까지 빈을 금지케 하였으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천황의 빈은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치러졌다.⁷¹⁾ 고구려에서는 그러한 조치마저 없었으므로, 빈의 기본적인 방식은 줄곧 유지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후기를 다룬 문헌에서 장기간의 빈 풍속을 언급한 점(A-4-①)은 이를 보여 준다.

2. 후장 및 기타 풍속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후장을 비롯한 물품 관련 행위이다. 애초에는 후장 풍속이 있어 금·은과 재물을 장례 시 모두 쓴다고 하였다(A-1-②, A-2-②). 널리 알려졌듯이, 고구려 고분에서 부장품이 많이 발견되지 않기에, 후히 장사하였다는 기술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후장이란 부장품의 많고 적음뿐 아니라 상장의례의 길고 성대한 과정, 대규모 잔치, 장대한 무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⁷²⁾ 달리 생각해야 한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거대한 고분이 조영되었고, 장기간의 빈이 치러졌기에 상장의례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었을 것이다. 금·은과 재물을 다 썼다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해당 기록은 일정한 사실성을 담보한다.

그런데 후대의 기록에서는 매장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죽은 이가 썼던 물품을 가져간다 하였다(A-4-④). 이에 대하여 전거 문헌이 후대의 산물이기는 하나 상황 자체는 이전 시기, 즉 후장이 성행하던 때의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기도 하고,⁷³⁾ 후장 습속과 대비되는 행위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 이해하기도 한다.⁷⁴⁾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하나는 그러한 물품이 장례를 위하여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라, 죽은 이가 평소 쓰던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후장의 연장선에서 상주 측이 자신들의 재력과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다면, 장례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물품을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생시 물품이 무덤에 함께 들어가는 등 묘주와 운명을 함께하지 않고, 타자에게 나누어져 양자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점이다. 즉 죽은 이와 물질적인 것과의 연계가 약해졌

백제 遺民의 喪葬禮」『韓國古代史研究』104, 379쪽이 참조된다.

71) 김후련, 2002, 「고대 일본인의 장송의례」『比較民俗學』23, 388~392쪽.

72) 나희라, 2008, 앞의 책, 144쪽.

73) 김시덕, 2004, 앞의 논문, 407쪽; 나희라, 2008, 위의 책, 127쪽, 143~145쪽;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3~14쪽.

74) 趙法鍾, 1995, 앞의 논문, 189쪽;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46~47쪽.

다. 육체혼 관념이 강고하였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힘들었을 것이다. 해당 관념이 강한 사회에서는 영혼도 물질적인 생활을 한다고 여겨, 시신의 보존과 아울러 여러 물품을 함께 묻는 후장 습속이 나타나기 때문이다.⁷⁵⁾ 그러므로 묘주에게 유의미하였을 관련 물품이 이승에 계속 머물게 된 것은 육체혼 관념이 약해진 상황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물품 분배 행위는 후장이 지녔던 위상이 동요한, 바꿔 말해 박장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기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후장 습속은 무덤 중시 풍조와 연관되었는데,⁷⁶⁾ 새로운 흐름은 대략 4세기 후반~5세기를 거쳐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 무렵 고구려에서는 무덤 중시 풍조가 약해졌기에,⁷⁷⁾ 그와 연계되어 박장 풍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⁷⁸⁾ 물론 단기간에 이러한 움직임이 정착하였으리라 여기기는 힘들고, 일정한 과도기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다만 5~6세기 이후 고분의 부장품에서 후장과의 연관성이 약해진 데서 보자면,⁷⁹⁾ 상장의례에 과도한 재물을 사용하는 습속은 점차 사그라지지 않았을까 한다. 물품 분배 기사(A-4)의 전거 문헌(『隋書』)이 고구려 후기를 다루었으므로, 그러한 풍조는 줄곧 유지된 것 같다. 평양도읍기 왕릉의 규모가 대체로 이전보다 못하고 능원이 쇠퇴하였으며 부장품 면에서도 빈약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례에 쓰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경감되었음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적석총 축조와 소나무·잣나무 식수 행위(A-1-③ 및 A-2-③)다. 이들은 각기 A-1·2와 A-4 어느 한쪽에만 남아 있다. 따라서 그것이 존속한 시간적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적석총 축조가 국내도읍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양상이란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식수 행위의 경우, 앞서 3세기 이후 중국 문물의 전래 속에 등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나무나 잣나무 등을 심는 것은 봉분을 올리는 것과 함께 후장의 지표 중 하나였다. 박장을 도모한 曹操가 建安 23년(218) 자신의 수릉인 高陵에 봉분을 올리지 말고 나무를 심지 말도록(不封不樹) 한 일⁸⁰⁾에서도 그 점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의 후장 습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졌으므로, 그와 연계된 식수 행위 역시 점차 동요하여 결국 소멸하지 않았을까 한다.

75) 나희라, 2008, 앞의 책, 56~57쪽.

76) 강진원, 2021, 앞의 책, 228~229쪽.

77) 강진원, 2021, 위의 책, 245~254쪽.

78) 석실 적석총 벽화를 후장에서 박장으로 가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50쪽, 153쪽).

79) 이는 강현숙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80) 『삼국지』 권1, 위서1, 기1, 무제 建安 23년 6월, “命曰 古之葬者 必居瘠薄之地 其規西門豹祠西原上爲壽陵 因高爲基 不封不樹”

이제 남은 것은 처음 사람이 죽었을 때는 울지만, 장사할 때는 鼓舞作樂, 즉 북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던 행태(A-4-③)이다. 이를 중국 한대에 유행하였던 挽歌의 영향으로 보아 유교적 상장의례의 범주에서 이해하기도 하고,⁸¹⁾ 재래적 토대 위에서 행해진 습속이라고도 여긴다.⁸²⁾

그런데 이처럼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망자를 보내는 행태 자체는 그다지 독특한 것이 아니다. 고대 일본 역시 상례 시 술을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였으며,⁸³⁾ 빈 과정에서 가무가 함께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⁸⁴⁾ 덧붙여 중국 한대에 부여 및 고구려와의 교섭 과정에서 ‘鼓吹’가 나오고,⁸⁵⁾ 김유신 사후 문무왕이 고취하는 이들을 보냈으며,⁸⁶⁾ 고취는 본디 군악으로 儀衛에 사용되었다는 점⁸⁷⁾을 볼 때, 격식을 갖춘 일이라면 ‘鼓舞’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또 유교적 색채가 짙지 않았던 高車에서는 상례 시 ‘歌舞作樂’하였는데,⁸⁸⁾ 고무작악과 유사하다고 이해된다.⁸⁹⁾ 따라서 이는 재래로부터의 습속이 훗날 기록에 남은 것이 아닐까 한다. 6세기 후반의 상황을 전하는 『周書』에 언급된 부여신묘·등고신묘⁹⁰⁾의 정체가 그보다 앞선 시기부터 존재하였던 유희신묘·시조묘인 점⁹¹⁾에서 드러나듯, 이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고무작악은 상장 기간이나 후장 습속의 변화와 무관하게 큰 틀에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상장의례는 이상과 같은 전개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 공간과 운영은 어떠하였을까. 이 점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81)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56~57쪽.

82) 나희라, 2008, 앞의 책, 127쪽;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2쪽.

83) 주25).

84) 姜琬錫, 2005, 앞의 논문, 15~20쪽.

85)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부여, “順帝永和元年 其王來朝京師 帝作黃門鼓吹角抵戲以遣之”; 같은 책, 같은 권, 高句麗,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86)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 “大王聞訃震慟 贈賻彩帛一千匹租二千石 以供喪事 給軍樂鼓吹一百人 出葬于金山原 命有司立碑 以紀功名”

이때의 조치는 당 상장령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해된다(채미하, 2012, 앞의 논문, 57쪽).

87) 竹居明男, 1985, 「日本上代の喪葬と歌舞・再考 -樂器の使用をめぐって-」 『日本書紀研究』 13, 塙書房, 166쪽.

88) 『위서』 권103, 열전91, 고차, “時有震死及疫癘 則爲之祈福 若安全無他 則爲報賽 …… 平吉之人則歌舞作樂 死喪之家則悲吟哭泣”

89) 나희라, 2008, 앞의 책, 111쪽 주26).

90) 『주서』 권49, 열전41, 이역 상, 고려, “尤好淫祀 又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之象 一曰登高神 云是其始祖 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與朱蒙云”

91) 강진원, 2021, 앞의 책, 173쪽.

Ⅲ. 상장의례 공간과 운영

고구려 상장의례 과정에서는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운영되었을 것이다. 이에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련의 절차에 세세하게 다가가기도 하였다.⁹²⁾ 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3년상이 중국의 3년상과 다른 방식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상장의례에 맞춘 추론이 실상에 얼마나 부합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문헌 기록에 토대를 둔 채, 발굴 성과를 참조하여 그 면모를 살펴보는 편이 좋겠다. 종래 가장 이목을 끈 부분은 장기간의 빈이다. 따라서 그 점을 먼저 해명해야 한다.

고구려에서는 빈소를 ‘屋內’, 즉 건물 안에 두었다(A-4-①). 이때의 건물을 가옥(私邸)으로 본다면,⁹³⁾ 집에서 3년간 시신을 모신 것이 된다. 민간에서 대체로 그렇게 모셨기에 기록에 남았을 터이다.⁹⁴⁾ 다만 지배층, 특히 왕실도 그랬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왕실이라면 왕궁이 될 터인데 3년이라는 기간, 적게 잡아도 25개월 전후한 시간 동안 시신을 그곳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존에 신경을 쓴다 한들 재래적 방식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다.

물론 왕궁은 넓은 공간이기에, 특정 장소(殿閣)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여길 수도 있겠다.⁹⁵⁾ 신라 경애왕의 빈전이 西堂에 마련되었고,⁹⁶⁾ 고려나 조선에서도 빈전은 대체로 궐내에 자리하였다.⁹⁷⁾ 다만 이는 고구려처럼 장기간의 빈을 행한 것이 아니기에 달리 파악해야 한다. 아무리 선왕의 권위에 힘입고자 하여도, 새 왕이 재위 3년차까지 그 시신과 함께 왕궁에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다.

그래서 왕궁 바깥에서 소재지를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기록에서 언급된 ‘옥내’의 ‘屋’은 가옥을 특정하는 표현은 아니며 건물과 같은 구조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왕실의 경우 왕궁과는 떨어진 곳에 별도의 빈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빈이 치러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92)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57~188쪽.

93) 이장용, 2019, 앞의 논문, 250쪽.

94)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평소에 존재하던 건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이한상, 2014, 앞의 논문, 81쪽).

95) 채미하, 2013, 「한국 고대의 宮中儀禮-即位禮와 朝賀禮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12, 19쪽; 이한상, 2014, 위의 논문, 82쪽.

96)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원년 11월, “舉前王屍 殯於西堂 與羣下慟哭 上諡曰景哀 葬南山蟹目嶺 太祖遣使弔祭”

97) 이병호, 2018, 앞의 논문, 16~17쪽; 張守男, 2019, 「백제 무령왕의 빈례 절차 연구」 『百濟研究』 69, 78~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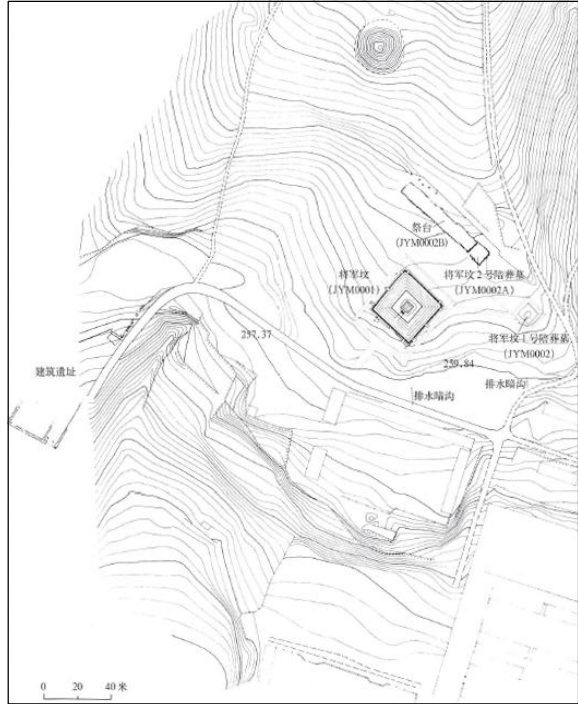
주변의 사례를 보면, 백제에서는 빈소가 왕궁 외곽에 자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웅진도읍기 공산성 서북쪽의 정치산 유적이다.⁹⁸⁾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었지만,⁹⁹⁾ 그 점을 수긍하여도 마찬가지다. 「무령왕비 묘지」에 따르면 무령왕과 합장되기 전 무령왕비가 西地, 즉 서쪽 땅에서 상을 치렀다고(居喪) 하였는데,¹⁰⁰⁾ 이때 방위의 기준은 왕궁일 터이기에, 무령왕비의 시신이 처음 안치된 곳은 왕궁과 괴리된 지역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¹⁾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적석 유구가 빈렬의례 공간으로도 추정되며,¹⁰²⁾ 사비도읍기에도 왕궁과 거리가 떨어진 능산리 고분군 등에 빈소가 함께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에,¹⁰³⁾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였던 것 같다.¹⁰⁴⁾ 한편 고대 일본의 경우 군주의 빈을 궁정에서 행했다는 기록도 있으나,¹⁰⁵⁾ 궁 외부에 존재한다고도 하였으며,¹⁰⁶⁾ 지배층의 경우 빈소가 밖에 두어졌다 하는데,¹⁰⁷⁾ 고분군과 인접하여 자리한 예도 확인된다.¹⁰⁸⁾

-
- 98)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8~19쪽; 金吉植, 2001, 「氷庫를 통해 본 公州 艇止山遺蹟의 性格」 『考古學誌』 12, 63~69쪽; 이한상, 2014, 앞의 논문, 92~96쪽; 張守男, 2019, 위의 논문, 80쪽.
- 99) 이남석 · 이현숙, 2016, 「百濟 喪葬儀禮의 研究 - 鎭江流域 상장의례 遺蹟의 意味 -」 『百濟文化』 54, 316~319쪽; 이장웅, 2017, 「백제 웅진기 ‘建邦之神’ 제사와 聖王代 유교식 天 관념」 『韓國古代史探究』 26, 95쪽; 이나다 나츠코(稲田奈津子), 2018, 「일본 고대묘지와 한국, 그리고 무령왕릉 지식」 『百濟學報』 26, 232쪽; 이병호, 2018, 앞의 논문, 13~17쪽.
- 100) 「무령왕비 묘지」, “丙午年十二月 百濟國王王妃壽終 居喪在西地”
이를 빈이 아니라 왕궁 서쪽 지역(西地)에서 유족이 복상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이나다 나츠코(稲田奈津子), 2018, 위의 논문, 234쪽; 이병호, 2018, 위의 논문, 20~21쪽).
- 101) 공주향교 뒷산에 해당하는 교촌봉의 석축 유구를 빈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장웅, 2019, 앞의 논문, 244쪽).
- 102) 이남석 · 이현숙, 2016, 앞의 논문, 330~331쪽.
- 103) 申光燮, 2006, 「百濟 泗泚時代 陵寺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3쪽; 조경철, 2009, 앞의 논문, 131쪽 주53); 김종만, 2016, 「부여 능산리사지 발견 新要素」 『先史와 古代』 48, 40~41쪽; 이장웅, 2019, 앞의 논문, 272쪽; 정재운 · 박초롱, 2020, 앞의 논문, 48쪽; 박초롱, 2021, 「고대 수묘제와 백제 守墓 연구」 『百濟文化』 64, 51쪽.
- 104) 한성도읍기의 왕실 묘역인 석촌동 4호분 인근의 수혈유구(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6~17쪽), 혹은 일부 고분과 연결한 유적을 빈소(빈전)로 보기도 하는데(이장웅, 2019, 위의 논문, 240~243쪽), 이를 긍정한다면 상당한 유구성을 지닌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
- 105) 姜琬錫, 2005, 앞의 논문, 7쪽; 이한상, 2014, 앞의 논문, 85쪽; 이병호, 2018, 앞의 논문, 16쪽; 이장웅, 2019, 위의 논문, 231쪽, 250쪽, 260쪽.
- 106) 이한상, 2014, 위의 논문, 90쪽.
- 107) 주21).
- 108)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7쪽; 姜琬錫, 2005, 앞의 논문, 10~12쪽 참조.

고구려의 경우 주목되는 것은 마선구 2100호분·천추총·태왕릉·장군총 등 국내도읍기 일부 왕릉 근방에서 발견된 건축 유적이다. 이들은 각 왕릉과의 거리가 멀게는 200~300m 떨어져 있는데(〈그림 2〉 참조), 기존에는 陵廟¹⁰⁹⁾ 혹은 수묘 관련 건축으로 파악하였다.¹¹⁰⁾ 다만 백제와 고구려의 喪制가 비슷하였다는 점¹¹¹⁾을 고려하면, 해당 구조물 또한 백제와 마찬가지로 빈소의 성격을 지녔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왕궁과 분리되었으나 왕릉과도 거리를 둔 곳에 빈소가 마련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어떻게 보든 평양도읍기 이후에는 왕릉과는 구별되는 장소에 빈소가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무렵의 왕릉급 고분 근방에서 건축 유적이 발견된 사례가 드문 탓이다.

이때의 빈소가 어떤 모습을 하였는지는 알기 힘들다. 중국 고전에서는 구덩이를 파고 관을 안치한다 하였다.¹¹²⁾ 고구려에서 이를 물렸을 것 같지는 않으나, 굳이 땅을 파내는 번거로운 행위까지 하였을지는 의문이다. 고대 일본의 빈소는 대개 한 변의 길이가 2~4m 정도였으며,¹¹³⁾ 高床式이나 평지식 구조의 견고한 가옥으로



〈그림 2〉 장군총 평면도(출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326쪽)

109) 조우연, 2019, 『天帝之子: 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420~421쪽; 강현숙, 2018, 앞의 논문, 77~78쪽.

110) 강진원, 2021, 앞의 책, 194~195쪽.

111) 『수서』 권81, 열전46,동이, 백제, “喪制如高麗”

112) 『예기』 단궁 상, “夫子曰 賜爾來何遲也 夏后氏殯於東階之上 則猶在阼也 殷人殯於兩楹之間 則與殯主來之也 周人殯於西階之上 則猶賓之也 …… 子游曰 飯於牖下 小斂於戶內 大斂於阼 殯於客位 祖於庭 葬於墓 所以即遠也 故喪事有進而無退”; 『의례』 사상례12, “掘埵見衽[埵埋棺之坎者也 掘之於西階上 衽小要也] …… 主人奉尸 斂于棺 踊如初 乃蓋[棺在埵中 斂尸焉 所謂殯也 檀弓曰殯於客位]”

113) 권五榮, 2000, 앞의 논문, 17쪽.

완전히 폐쇄된 형상은 아니었다.¹¹⁴⁾ 고구려도 이와 유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고분 벽화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한다.

한편 한국 고대에는 復次葬, 즉 먼저 시신을 묻는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정식으로 매장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¹⁵⁾ 동옥저에서 시신을 가매장한 후 뼈만 추려 널에 안치한다거나(洗骨葬),¹¹⁶⁾ 백제 비유왕의 시신이 露地에 임시로 두어졌으며,¹¹⁷⁾ 매장하여 빈하는 방식도 존재하였던 것¹¹⁸⁾은 그 점을 잘 보여 준다.¹¹⁹⁾ 고구려의 3년상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상정해 볼 수도 있겠다.¹²⁰⁾ 하지만 세골장이나 초장과 같은 임시 매장은 장기간 빈을 지내는 것과 기본적으로 결이 다르다.¹²¹⁾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사후 시신에 그와 같은 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발기의 시신을 임시로 묻은 일(B-2-②)이나 동천왕 사후 순사한 이들을 쉼으로 덮은 일을 거론할 수도 있겠으나,¹²²⁾ 전자는 분쟁에서 패배한 인물의 자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매장까지 걸린 기간(약 4개월)은 탈육 등 복차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충분치 않다.¹²³⁾ 후자는 매장이 아니라 시신을 가려 둔 것이다. 고구려에서 부여와 마찬가지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얼음을 사용하였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여도 그렇게

114) 姜琬錫, 2005, 앞의 논문, 13~14쪽, 22쪽.

115)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9~12쪽;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52~53쪽; 이장웅, 2019, 앞의 논문, 236쪽, 245쪽 참조.

116)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동옥저, “其葬作大木槨長十餘丈開一頭作戶新死者皆假埋之才使覆形皮肉盡乃取骨置槨中”

117)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 “先王之骸骨 權擯於露地”

118) 『한원』 변이부, “括地志曰……其葬亦有置屍於山中者亦有埋殯之”

이때의 ‘埋殯’은 가매장으로 이해된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증세사연구소, 2018,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273쪽).

119) 신라 탈해이사금의 뼈를 부수어 塑像을 만든 뒤 궤에 두었다거나(『삼국유사』 권1, 기이 1, 第四 脫解王, “葬 疏川丘中……碎爲塑像安闕內”), 설총이 부친 원효의 유해로 진용을 빚어 분황사에 안치하였다는 전승(『삼국유사』 권4, 의해5, 元曉不羈, “既入寂 聰碎遺骸 塑真容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을 복차장의 사례로 보기도 한다(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2쪽; 나희라, 2008, 앞의 책, 50~51쪽;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53쪽 주70)). 그러나 이들은 매장이거나 화장이 종료된 이후의 조치라 따르기 어렵다.

120) 孔錫龜, 2008, 앞의 논문, 133~134쪽; 정재윤·박초롱, 2020, 앞의 논문, 43쪽.

121) 김세기,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에 대한 토론」 『韓國古代史研究』 20, 31~32쪽; 김시덕, 2004, 앞의 논문, 396쪽;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61~162쪽, 164쪽; 정재윤·박초롱, 2020, 위의 논문, 47~48쪽 참조.

122)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0~11쪽;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53쪽 주70); 이장웅, 2019, 앞의 논문, 247쪽.

123) 김시덕, 2004, 앞의 논문, 397쪽.

보기는 힘들다. 임시 매장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얼음을 썼을 것 같지 않은 탓이다.

그 점은 장례에 쓸 옷, 즉 수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수의는 기록에 나타날(A-2-①) 뿐 아니라, 일부 고분에서 섬유 조각이 발견되므로¹²⁴⁾ 실재하였다 여겨진다. 그런데 수의 착용은 시신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고자 하였음을 말하기에,¹²⁵⁾ 세골장이나 초장 같은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고구려의 사례(A-4-①)는 물론이요, 중국의 고전 문헌이나 역대 사서에서 ‘빈’과 ‘장’을 구분하였다는 점¹²⁶⁾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시신에 수의를 입혔다는 것을 보면 염습도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데,¹²⁷⁾ 기본적인 빈 방식은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체를 빈소로 옮긴 뒤, 얼음을 두어 최대한 부패를 막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한다.

빈이 끝나면 매장을 하였다. 따라서 그에 관한 사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제의 경우, 이때 이목을 끈 문제는 관의 안치 방식이다. 즉 무령왕릉에 무령왕 부부의 시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다. 빈 과정에서 시신을 두었던 관이 그대로 무덤으로 갔다고 추정하기도 하고,¹²⁸⁾ 시신이 무덤으로 운구된 이후 그곳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관으로 옮겨졌다고 여기기도 하며,¹²⁹⁾ 빈에서 쓴 관을 해체하여 시신을 묘실에 안치한 후 다시금 관을 조립하였다고도 본다.¹³⁰⁾

고구려의 경우 보존 상태가 양호한 관의 발견 사례가 드물어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관에 시신을 싣고 무덤까지 운구하였을 가능성¹³¹⁾이 크지 않을까 한다. 적석총의 구조 때문이다. 적석총은 대개 매장부가 지상에 존재하였다. 특히 태왕릉이나 장군총과 같은 초대형 왕릉급 고분은 매장부가 지면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자리하였다. 그곳까지 가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간 빈소에 둔 선왕을 별다른 보호 장구 없이 옮긴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시신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에 모신 뒤 매장부로 이동시켰으리라 짐작된다.¹³²⁾ 이는 매장부 진입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고분도 마찬가지였을

124)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57쪽.

125) 김시덕, 2004, 앞의 논문, 389쪽.

126) 이한상, 2014, 앞의 논문, 81~83쪽.

127)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2쪽, 157~159쪽.

128) 權五榮, 2000, 앞의 논문, 16쪽; 崔泰淨, 2014, 위의 논문, 158~159쪽; 박서영, 2016, 앞의 논문, 16쪽.

129) 강원표, 2021, 「武寧王陵 葬禮過程에서 〈設置式 棺〉의 檢討」 『百濟學報』 38, 76~82쪽.

130) 김규동, 2021, 「백제 무령왕릉 상장례 재고 -목관 안치 방식으로 본 매장의례 복원-」 『韓國古代史研究』 104, 33~39쪽, 42쪽.

131)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59쪽.

132) 이와 관련하여 왕릉급 적석총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늘어서 있는 석대를 운구 관련 시설로 보기도 한다(강현숙, 2018, 앞의 논문, 74쪽). 하지만 이 유적은 애초 배총군이었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각 고분 사이의

것이다. 기본적으로 왕실이나 지배층에서 택한 방식을 따랐으리라 상정되는 탓이다.

그런데 평양도읍기의 왕릉급 고분은 봉토분으로 축조되었을 뿐 아니라, 매장부와 지면 사이의



〈그림 3〉 마선구 2100호분 입석판(출처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圖版 21-3)

거리도 국내도읍기 말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워진다. 따라서 시신 안치 방식이 변화하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정비된 틀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연도의 폭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관을 옮길지 설치할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장 전후에는 의례가 치러졌다. 그 점은 고구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매장부 안쪽의 경우 석실 입구 근처에서 출토된 식생활 기물이나 마구 계통 유물 및 석실 내에 존재하는 石床 혹은 제대를 통하여 의례 시행을 추정하기도 하고,¹³³⁾ 매장부 바깥쪽의 경우 일부 왕릉급 적석층에서 발견되는 입석판이나(〈그림 3〉 참조)¹³⁴⁾ 분구 위 혹은 주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¹³⁵⁾ 매장이 완료된 뒤에는 묘상건축에서 관련 의례가 행해졌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재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기 쉽지 않다.¹³⁶⁾

마지막으로 상장의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바로 식수 및 물품 분배 행위다. 전자의 경우, 고국천왕릉 전승(C-3)에서 왕릉에 일곱 겹으로 소나무를

경계가 허물어졌거나, 왕릉 조영 이후 추가로 조성될 배충을 만들기 위해 자재를 쌓아 놓은 흔적일 수 있어(강진원, 2021, 앞의 책, 194쪽)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133) 강현숙, 2018, 위의 논문, 80~81쪽;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75~176쪽; 이장웅, 2021, 「4~5세기 고구려 왕릉급 고분 제사와 太歲 기년법 -우산하 3319호분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39, 77~78쪽.

134) 강현숙, 2018, 위의 논문, 81~82쪽.

135)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73쪽; 이장웅, 2021, 앞의 논문, 77쪽.

136) 태왕릉에서 출토된 금동계 상다리를 무덤 앞에서 행해진 정기적인 묘제의 흔적이라 추정하기도 한다(이장웅, 2021, 위의 논문, 58쪽, 78쪽). 하지만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제사에 쓰일 물품을 그렇게 두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의례와 관련되거나 부장품이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심었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신분에 따라 식수의 조합 혹은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산상왕의 형 받기가 왕의 예로 매장된 일(B-2-③)과 아울러, 상장의례가 일정한 위계성을 갖추었음을 드러내는 사례라 하겠다.

후자의 경우 왕릉급 적석총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石臺(〈그림 4〉 참조),¹³⁷⁾ 혹은 입석판에서 행해졌다고 보기도 한다.¹³⁸⁾ 그러나 해당 행위는 박장 풍조가 강해진 시기의 습속으로 이해되기에, 대체로 후장이 성행하던 시기에 조성된 적석총과 짝을 이루는 석대나 입석판을 옆두에 두기는 쉽지 않다. 물품 분배 행위는 일회성 행사이다. 그렇기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달리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그림 4〉 서대총(서대묘) 능원
(출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
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99쪽)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에서는 애초 100일상을 지냈다. 하지만 3세기 전반 이후 중국 상장의례가 유입된 결과 3년상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매장부에 불을 지르던 재래의 습속도 소멸하여 갔다. 이때의 3년상은 장기간의 빈을 수반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왕실에 있다. 거대한 고분을 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매장을 서두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선왕의 혼령이 온전히 함께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 결과였다.

이때 왕실의 빈소는 왕궁과 떨어진 곳에 두어진 별도의 구조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 면에서 일부 왕릉급 적석총 근방에 존재하는 건축 유적에 주목해 볼 수도 있겠으나,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빈이 끝난 뒤에는 시신을 관에 실은 채로 무덤까지 이동하였다고 여겨지는데, 매장부가 지

137) 崔泰淨, 2014, 앞의 논문, 174쪽.

138) 강현숙, 2018, 앞의 논문, 82쪽.

상에 존재한 까닭이다. 매장 전후 의례가 치러졌을 테지만, 뚜렷한 양상에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원래 돌을 쌓아 분구를 만들고 아울러 상당한 경제력을 담보로 한 후장 풍속이 이루어졌으며, 3세기 전반 이후 무덤 주변에 식수 행위도 나타났다. 식수는 신분에 따라 조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후 4세기 후반~5세기에 걸쳐 무덤이 가졌던 종래의 위상이 약해져 박장 풍조가 강해진 결과, 매장 시 죽은 이의 물품을 타인에게 배분하는 습속이 대두하였다. 이는 일회성 행사로서 임의적 성격을 드러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례 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망자를 보내던 전통은 유지되었다.

요컨대 고구려 상장의례 양상을 보면, 재래적 토대를 유지한 부분도 있으나 외래적 요소를 수용한 부분 역시 상당하다. 다만 후자라 하여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였기에, 외래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이라기는 애매하다. 아울러 상장 풍속의 변화가 3세기 무렵부터 이루어졌으므로, 그 분기를 소수림왕~장수왕 시기로 이해한 견해¹³⁹⁾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논문 투고일 : 2022.11.13.	논문 심사완료일 : 2022.12.02.	게재확정일 : 2022.12.20.
----------------------	------------------------	---------------------

139) 나희라, 2008, 앞의 책, 126쪽.

■ 參考文獻 ■

- 강원표, 2021, 「武寧王陵 葬禮過程에서 〈設置式 棺〉의 檢討」 『百濟學報』 38.
- 姜琬錫, 2005, 「일본 고대의 殯(모가리)에 대하여」 『고문화』 65.
- 강진원, 2021,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 강현숙, 2006, 「중국 길림성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의 구조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1.
- 강현숙, 2018, 「고구려 무덤제사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01.
- 孔錫龜, 2008, 「集安地域 高句麗王陵의 造營」 『高句麗渤海研究』 31.
- 權五榮,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 권오영, 2002, 「喪葬制를 中心으로 한 武寧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百濟文化』 31.
- 권오영, 2022, 「유라시아 동부 여러 정치체의 상장의례」 『2022년 국립공주박물관 국제학술대회 :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
- 기경량, 2016,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권운문 와당 명문의 판독과 유형」 『高句麗渤海研究』 56.
- 김규동, 2021, 「백제 무령왕릉 상장례 재고-목관 안치 방식으로 본 매장례 복원-」 『韓國古代史研究』 104.
- 金吉植, 2001, 「水庫를 통해 본 公州 艇止山遺蹟의 性格」 『考古學誌』 12
- 김시덕, 2004, 「고구려 상례문화의 정체성」 『역사민속학』 18.
- 김용성, 2014,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혁」 『中央考古研究』 15.
- 김종만, 2016, 「부여 능산리사지 발견 新要素」 『先史와 古代』 48.
- 金哲堧, 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김후련, 2002, 「고대 일본인의 장송의례」 『比較民俗學』 23.
-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8,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 박서영, 2016, 「백제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용도와 성격」 『美術史學研究』 289.
- 박초룡, 2021, 「고대 수묘제와 백제 守墓 연구」 『百濟文化』 64.
- 孫仁杰, 2001, 「高句麗 石室墓의 起源」 『高句麗研究』 12.
- 申光燮, 2006, 「百濟 泗泚時代 陵寺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나다 나츠코(稲田奈津子), 2018, 「일본 고대묘지와 한국, 그리고 무령왕릉 지식」 『百濟學報』 26.
- 이남석·이현숙, 2016, 「百濟 喪葬儀禮의 研究 -錦江流域 상장의례 遺蹟의 意味-」 『百濟文化』 54.
- 이병호, 2018, 「웅진·사비기 백제 왕실의 조상 제사 변천」 『先史와 古代』 55.
- 이장웅, 2017, 「백제 웅진기 '建邦之神' 제사와 聖王代 유교식 天 관념」, 『韓國古代史探究』 26.

- 이장웅, 2019, 「백제 武寧王과 王妃의 喪葬禮 -殯과 假埋葬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33.
- 이장웅, 2021, 「4~5세기 고구려 왕릉급 고분 제사와 太歲 기년법 -우산하 3319호분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39.
- 이한상, 2014, 「백제의 상장의례와 고대 동아시아」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 張守男, 2019, 「백제 무령왕의 빈례 절차 연구」 『百濟研究』 69.
- 정재윤·박초롱, 2020, 「문헌 및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 -백제를 중심으로-」 『百濟學報』 31.
- 정호섭, 2021, 「唐의 喪葬습을 통해 본 고구려·백제 遺民의 喪葬禮」 『韓國古代史研究』 104.
-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敎」 『東北亞歷史論叢』 20.
- 조경철, 2009, 「백제 왕실의 3년상 -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5.
-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
- 조우연, 2019, 『天帝之子 : 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韓國古代史研究』 65.
- 채미하, 2013, 「한국 고대의 宮中儀禮 -即位禮와 朝賀禮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12.
- 崔泰淨, 2014, 「考古資料를 통해 본 高句麗 喪葬禮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洪廷姮, 2003, 「위진남북조시대 ‘흉문백력’에 대하여」 『魏晉隋唐史研究』 10.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 楊樹達, 2000, 『漢代婚喪禮俗考』, 上海古籍出版社.
- 谷川健一, 1983, 「王權の發生と構造」 『稻と鐵 : さまざぼな王權の基盤』, 小學館.
- 竹居明男, 1985, 「日本上代の喪葬と歌舞·再考 -樂器の使用をめぐる-」 『日本書紀研究』 13, 塙書房.
- 和田萃, 1995, 『日本古代の儀禮と祭祀·信仰(上)』, 塙書房.

A Study on the Funeral Rites of Goguryeo

Kang Jinwon

During the early years of Goguryeo, people mourned for the deceased for 100 days. Yet the culture of three-year mourning spread out after the early 3rd century. In case of the three-year mourning, 'bin' (殯, preserving the body temporarily in a morgue) lasted for a long time. It was partially because it took a long time to build a royal tomb, but the more important reason was because the new king needed time to cement his power. Most likely, it is assumed that the royal temporary morgues (殯所) were located outside the royal palace. It is also assumed that the coffin with the body in it was moved to the tomb after the 'bin' period.

Originally, in Goguryeo, grand funeral was enacted. Then, trees were planted around tombs after the early 3rd century. However, because the trend of simple funeral became prevalent from the late 4th century to the 5th century, the deceased's goods came to be distributed to others. Despite these changes, the tradition that escorting a funeral in a cheerful atmosphere was maintained.

Keywords : preserving the body temporarily in a morgue, one hundred-day mourning, three-year mourning, temporary morgue, distribution of the deceased's goods, planting trees